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

산정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라.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개발기본계획 확정”을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사업계획 확정”을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를 “다만, 증가되는 사업규모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며,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31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6조의3,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	----------

별표 2 제2호파목23)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른 특 화특구의 지정 및 특화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하는 때
---	--

별표 5 제3호가목2)가) 본문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마목1) 및 같은 호 파목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u>개발기본계획 확정</u>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u>게시하여야 한다.</u>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 ----- - <u>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u> ----- ----- ----- ----- <u>게시해야한다.</u>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u>사업계획 확정</u> 이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u>게시하여야 한다.</u>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 --- <u>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u> ----- ----- ----- ----- -- <u>게시해야한다.</u>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

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다만, 증가
되는 사업규모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며,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략)

대통령령 제2931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제2호마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별표 2 제2호파목23)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 ~ 5.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31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

-----.

별표 2 제2호마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	----------

별표 2 제2호파목23)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특화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5 제3호가목2)가) 본문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 5호 및 제9호”에 따른 --- (이하 생략)	별표 5 제3호가목2)가) 본문 중 “「 <u>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u> <u>법률</u> 」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u>제5호</u> ”에 따른 --- (이하 생략)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201-7281